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의4서식] <개정 2025. 8. 7.>

화학물질       등록       면제확인      **지위승계 신고서**  
 중점관리물질       신고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신고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
	주소(사업장)	(전화번호 : )	
	승계 사유		
화학물질명 (총칭명)			
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		
등록번호·신고번호			
신고사항	구분	승계 전	승계 후
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

제1항에 따라       화학물질       등록       면제확인     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.  
 중점관리물질       신고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**한국환경공단 이사장** 귀하

첨부서류	1. 화학물질 등록통지서,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, 화학물질 등록·신고 면제확인 신청결 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)	수수료 2,000원 (중기업은 1,000원, 소기업은 400원)
담당자	2.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
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지위승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